

---

횡성루지체험장 입장권 온라인 판매 및 홍보 대행  
**과업지시서**

---

# 횡성루지체험장 입장권 온라인 판매 및 홍보 대행 과업지시서

## I 과업 개요

- 가. 과업명 : 횡성루지체험장 입장권 온라인 판매 및 홍보 대행 용역
- 나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6. 11. 30. (월) 까지
- 다. 과업범위 : 횡성루지체험장 온라인 입장권 판매대행, 고객CS, 판매마케팅,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, 입장권 정산 및 결과 보고 등
- 라. 기초금액 : 금38,661,300원(금삼천팔백육십육만일천삼백원 / VAT포함추정치)
- 기초금액 산출근거
    - 금286,380,000원 (2026년 예상매출액) \* 수수료율 상한 (13.5%)
  - 입찰 방법
    - (최근 2년 평균 온라인 매출액) × (업체 제안 수수료율 %) = 입찰 금액
  - 입찰 시 제출하는 가격은 연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수료 총액이며, 실제 지급액은 실제 판매된 매출액에 낙찰 수수료율을 곱하여 정산함

※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예상 판매액에 대한 최대 수수료 총액을 의미하며 대금 정산은 실제 판매 실적에 낙찰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함. 예상 판매액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### 마. 정산방법

- 정산방식 : 본 용역의 대금 정산은 '선입금 후 사후정산' 방식으로 운영
  - 입금절차 : 계약 진행 후 재단과 협의된 판매예정액 일부를 (예상 판매액의 10%) 판매개시 (7일) 전까지 지정된 재단명의 계좌에 입금
  - 사후정산
    - ① 월별 티켓 판매 완료 후 선입금액과 실판매액 대조
    - ② 선입금 잔액이 10% 미만으로 떨어질 시 추가 금액 입금
    - ③ 과업 종료 후 최종 정산 진행
-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 (기기설치, 운영인력 등)

### 바. 계약방법 : 제한(단가)입찰, 적격심사대상

## II 과업 내용

### 가. 온라인 입장권 판매 대행

- 선정된 용역업체 자사 및 제휴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입장권 판매
-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'횡성루지체험장'검색 시 예매, 결제, 입장까지 간편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판매·입장 연동 시스템 구축
- 온라인 플랫폼 및 OTA(Online Travel Agency) 판매 채널과 연계하여 판매
-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가 높은 다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 데이터를 확보하여 온라인 입장권 판매

### 나. 온라인 입장권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

-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각 채널별 실시간 판매량, 안내 문자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, 페이 및 기타 결제 수단별 예매시스템 구축
- 입장권 구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Site 제공
- 입장권 구매 완료시 구매자에게 QR코드가 포함된 예약 완료 문자 전송 (예약자 방문전 SMS, 카톡 알림 등 안내 알림서비스 제공)

### 다. 고객응대

- 온라인 판매 관련 CS센터 운영(취소, 환불 등 민원 응대)
- 코로나 등 불가항력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, 환불 처리 및 대응

### 라. 온라인 마케팅 지원

- 온라인 플랫폼 내 자사 상품 우선 노출 및 홍보 지원
- 방문객 비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
- 전국 온라인 판매 시기 및 대상별 세부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
- 온라인 커뮤니티, SNS를 통한 홍보, 이벤트 진행하여 티켓 판촉
- 온라인 입장권 판매 촉진 활동 및 판매 부진 시 대책 수립 및 시행

## 마. 판매 데이터 관리

- 총 판매분에 대한 카드·현금 결제내역, 권종별 세부 판매 내역, 판매율, 입장권 환불 및 예매취소율, 입장권 구매보상금 신청률 등 판매내역 빅데이터화 분석 및 보고서 제출

## Ⅲ 과업 수행지침

### 1. 기본원칙

- 1) 본 과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"재단"과 "과업수행자"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.
- 3) "과업수행자"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·성실의 의무를 진다.
- 4) "과업수행자"는 과업기간내에 용역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5)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"과업수행자"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6) 계약서에 대해 "재단"과 "과업수행자"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"재단"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7)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 2.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

- 1)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"과업수행자"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3) 본 과업은 "재단"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·감독 하에 수행한다.
- 4)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- 5) "과업수행자"는 계약체결 시 온라인 입장권 판매 및 활성화 마케팅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"재단"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추진계획서에는 추진계획, 추진일정표, 관리계획, 협찬계획 등 참여자 인적사항, 보안각서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함한다.
- 6) 과업 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"과업수행자"는 "재단"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- 7)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"과업수행자"는 "재단"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"재단"은 적극 지원한다.
- 8) 용역과업의 일관성·책임성 등 효과적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해 "재단"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.
- 9) 과업 특성상 제휴 판매일정 변경 등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"과업수행자"가 부담하도록 한다.
- 10) "과업수행자"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, 사전에 "재단"과 협의 후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 "재단"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"재단"의 교체요구시 "과업수행자"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.
- 11)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"과업수행자"는 "재단"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
  -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  -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
- 12) 사업세부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"과업수행자"는 총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 "재단"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3. 사업관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

- 1) "과업수행자"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,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착수계 제출 시 인력투입계획(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포함) 과업 세부 수행 예정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4)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(온라인 마케팅 추진 계획·실행방법·관리 등), 과업 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(분야별 참여 인력 및 과업수행 조직도), 관련 기관 협조요청 사항, 협찬 계획,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
#### 4. 이행, 보안 및 안전, 저작권에 관한 사항

- 1) "과업수행자"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"과업수행자"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"재단"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하지 못하며, 과업수행 중 "과업수행자"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"과업수행자"가 책임을 진다.
- 3) 과업 수행에 있어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.
- 4)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, 지식재산권(저작권 포함)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유한다. 다만,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- 5) "과업수행자"는 온라인 입장권 판매와 관련되어 제작 및 차용한 온·오프라인 디자인물들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하며 문제발생시 "과업수행자"가 비용 부담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#### 5. 계약의 해지

-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(해지)할 수 있다.
  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  - 2)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, "과업수행자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
  - 3)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,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  - 4) 용역 추진 중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인력, 장비,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,

- 폐기하여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
- 5) 온라인 입장권 판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아, 과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한 경우
  - 6) "재단"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  - 7)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  - 8) 상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, "재단"은 "과업수행자"에 과업중단을 지시하고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,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"과업수행자"는 "재단"의 처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## 6. 그 외 관리사항

- 1) "과업수행자"는 입장권 판매 각 제휴 채널 운용시 구매가 현저히 낮은 채널은 운용하지 않는다.
- 2) "과업수행자"는 입장권 판매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적 요소(용역사 협찬 등)를 활용하여 티켓 판매에 기여한다.

## 7. 유의사항

- 1) 과업의 변경
  -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"재단"의 지시에 따라 "과업수행자"와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.
  - 마케팅 추진계획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.
- 2) 마케팅 자료의 활용 및 소유
  - 재단에서 흥성루지체험장 관련 생산된 각종 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 - 마케팅시 활용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요청한 뒤 최신자료 및 정보만을 활용하여 마케팅 한다.

## 8. 회계 처리

- 1) 상품판매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“재단”이 제시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별도의 사항은 “재단”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2) 정산방법
  - “과업수행자”는 원활한 입장권 판매를 위하여 입장권 온라인 판매예상액 일부를 (10%) “재단”이 지정하는 계좌에 판매개시 전(7일) 까지 사전에 입금하여야한다.
  - “과업수행자”는 매월 말일 기준 실제 티켓 판매 실적(시스템 산출내역)과 선입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선입금잔액이 10%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로 입금하고, 과업 종료 후 최종 정산한다.
- 3) “재단”은 용역비의 집행 등에 대한 명백한 부정·부당함이 용역 기간 내 또는 완료 후의 정산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·환수 조치할 수 있다. 다만 과업수행자가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.